
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

2025. 10.

기 획 재 정 부
예 산 실

「총사업비 관리제도」 개선방안 [요약]

1. 추진배경

- 그간 총사업비관리는 비용절감을 통한 지출효율성 확보에 집중
-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수요 변화 → 제도개선 필요
 -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변경 수요 증가, 기술 진화 가속화
 - 안전성 강화 및 사업 신속추진 등 요구 확대

2. 4대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

(1) 신기술 창출·확산 기반 확대

- 1 AI 등 신기술의 건설분야 확산을 위해 BIM, C-ITS 등 안전성·효율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기술 활용시 자율조정 허용
- 2 민간의 창의·자율 활용을 위해 기술제안사업 사업비에 대해 공종별 칸막이 완화, 수익창출 부속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

(2) 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 마련

- 1 대형공사 감리비는 실제 관리단위인 공구별 산정, 사업자 귀책없는 사유로 감리·설계기간 연장시 실소요액(직접인건비·경비) 인정
- 2 예타규모 미만사업 타재를 면제하고, 상당 매몰비용 발생 및 긴급사유 등 수요예측재조사 면제 조항 신설
- 3 타당성재조사·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·중복 절차를 최소화

(3)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등

- 1 단계적 설계사업의 사업비 적기반영을 위해 통합설계 원칙을 마련하고, 타당성 판단시 미설계분은 유사사업 수준으로 산정
- 2 정보화사업 관리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관련 절차 명확화

(4)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

- 1 조달수수료, 안전 관련 가시설 등 자율조정 대상 확대
- 2 낙찰차액 감액조정 주기 연장하고, 과거 지침위반 사례 자진 협의시 패널티를 감경하여 행정부담 완화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의의	1
II. 4대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	3
III. 향후 추진계획	12

I. 추진배경 및 의의

□ **그간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비용절감을 통한 지출효율성 확보에 집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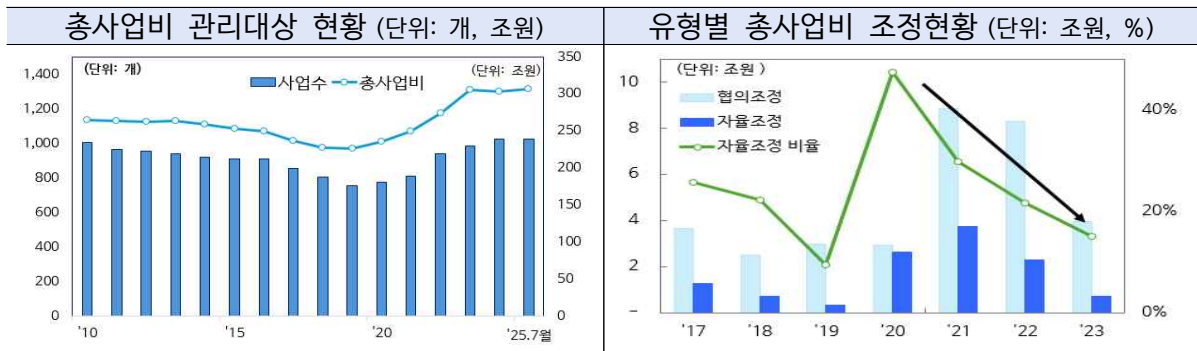
○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는 최근 5년 약 30% 증가*

* 관리대상사업** 총사업비 합계(조원): ('20.12월) 774조원 → ('25.7월) 1,025조원

** (토목정보화) 총사업비 500억원 & 국비 300억원 이상, (건축)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등

○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관리

- 전체 총사업비 조정액 중 주무부처 자율에 의한 조정비율은 최근 감소추세('22년 47.4% → '25.7월 15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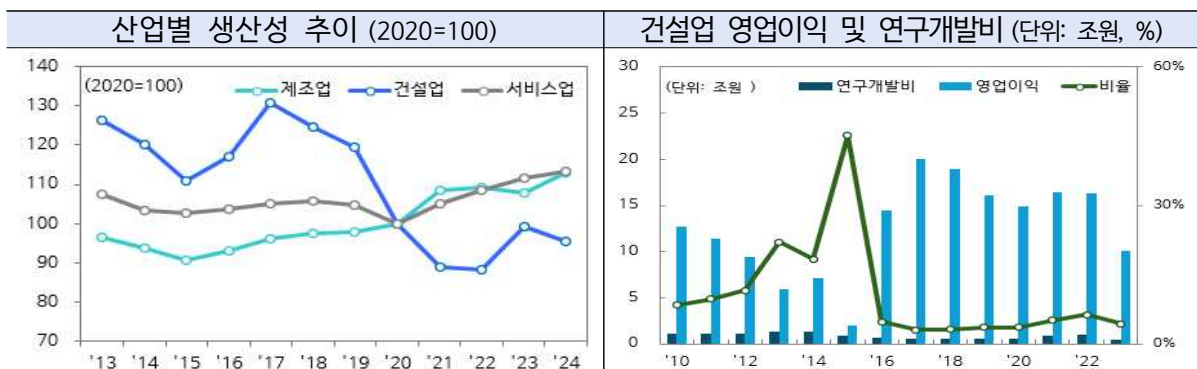


□ **진화가 빠른 기술환경 → 기술변화 속도에 대한 적기 대응 필요**

○ 각국은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가속화하는 한편,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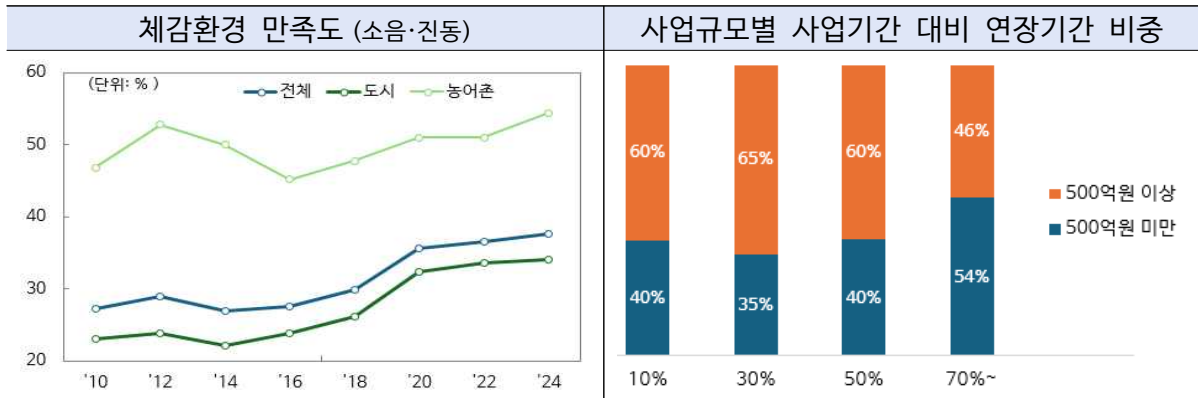
- SOC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, AI 등 디지털 기술 융합 투자는 효율성, 기후대응 회복력 확충 등을 위해 지속 증가할 전망

○ 우리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하향,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감소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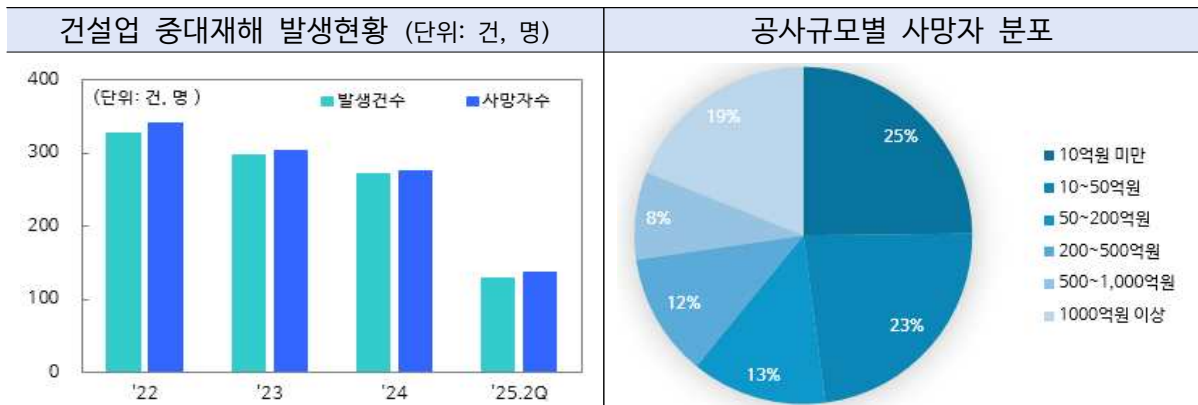
□ **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변경 수요 증가**

-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 다변화 및 사업계획 변경 증가
 - 생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기준점이 상승함에 따라 관련 규제가 변화하고 사업계획에 영향
 - 중규모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심화되는 경향



□ **안전성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 요구 확대**

- 건설업 중대 재해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, 여전히 상당
 - 건설현장 및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* 등 지속 확대
- *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,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



☞ **정책환경 변화에 대응,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효과성 확대 및 신속추진 등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개선 추진**

Ⅱ.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

1. 체계도

◇ 대규모 사업의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,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

목표

대규모 사업 성과 확대를 통해
국민 편의 제고 및 성장 뒷받침

4대
정책
방향

① 신기술 창출 및 확산 기반 확대

- ①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각부처 자율 확대
- ② 기술제안사업 등에 운용 유연성 제고

②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신속추진 지원

- ① 감리·설계 대가 산정방식 개선
- ② 타당성재조사 등 절차·요건 합리화



③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

- ① 단계적 설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
- ② 정보화·기술제안 사업 등 관리 절차 합리화

④ 행정부담 완화 등 제도 합리화

- ① 자율조정 대상 항목 확대
- ② 낙찰차액 반납절차 개선 및 패널티 감경요건 확대

2. 4대 정책방향

① **진화가 빠른 기술환경에 대응, 신기술·창의의 창출·확산 지원**

-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분야 효율성·안전성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 및 민간 창의 활용 확대
 - 기술제안사업 등은 기업의 비교우위 활용을 위해 사업비 관리 칸막이를 완화하고, 재정절감·수익창출 성과에 인센티브 강화
- ⇒ 대규모 재정사업이 AI 등 신산업 분야 경험축적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선도적 시장 조성자(Lead Market Shaper)로서 역할

② **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제도 개선**

- 감리·설계 대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, 기술심의 미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공기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사·시설 안전성 강화
- 타당성재조사, 수요예측재조사 등은 요건 합리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

③ **단계적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실효성 강화**

- 단계적 추진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, 관련 타당성재조사 요건도 개선
- 정보화사업, 기술제안사업에 대한 협의단계 명확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에 적기 대응

④ **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**

- 협의 필요성이 낮은 조달수수료 및 안전 관련 가시설 비용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상 확대
- 낙찰차액 감액조정 주기를 연장하는 등 행정부담을 완화

3. 개선방안

1 신기술 창출 및 확산 기반 마련

(1) 신기술 활용에 대한 자율조정 확대

- **(현황)** 시공·시설 효율성 등에 기여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시에도 설계변경에 대해 총사업비 협의조정 필요*

* 안전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 중

- **(개선방안)** 안전성·생산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에 대해 시공단계 자율조정(한도내)을 허용

→ BIM 시공관리, AI CCTV, C-ITS 등 스마트 기술 활용 지원을 통해 효율성·안전성 제고 및 건설업계 신기술 확산 지원

(2) 기술제안사업 등 사업비 운용 유연성 제고

- **(현황)**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종별 관리 의무 적용

- **(개선방안)** 기술제안사업 등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공종별 관리 의무 제외하여 민간의 전문성·기술우위 활용 확대

(3) 수익 창출 부속시설은 총사업비에서 제외

- **(현황)** 방음벽 등 부속시설로 인해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, 사업 타당성 저하 및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 발생

○ 현행 규정상 수익창출 시설은 총사업비에서 제외가능 하나, 부속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

- **(개선방안)** 민간 사업자, 지자체 등이 부속시설을 수익창출 시설로 전액 투자·활용하는 경우 총사업비에서 제외토록 명확화
 - * 다만,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·보수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이 없는 경우로 제한
- 부속시설의 경제적 효용 확대 및 재정 절감 효과

2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신속추진 지원

(1) 대형공사 감리비 산정방식 합리화

- **(현황)** 대형공사에서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감리비 부족 사례 발생
 - ① 실제 감리용역은 공구별로 발주하는 반면, 총사업비 산정시 전체 총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일부 기인
 - ②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 계약금액 5% 이내에서만 감리비 증액 허용
- **(개선방안)**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정 감리비 산정
 - ① 실제 공구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공구별 감리 요율 산정을 허용하되, 주무관청은 적정규모로 공구 산정·관리 책임
 - ②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시 현장 투입비용(직접 인건비, 직접경비)에 한해 감리비 증액 상한 제외

(2)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 허용

- **(현황)**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상 기술자문·심의 未대상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를 위한 지원 규정은 부재
- **(개선방안)**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
 - 기술자문위, 지방심의위 등 미대상 사업의 적정 공기 확인을 통해 시공 안전성 강화

[3] 설계기간 연장시 적정대가 지급

- **(현황)** 설계는 현장여건 변화, 민원, 인·허가 문제 등으로 과업 내용 및 기간 변경이 빈번
 - 발주청 귀책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시에도 설계대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근거 부재
- **(개선방안)** 발주청 귀책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시 설계대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, 설계 중단기간 실소요비용 지급 허용

[4] 예타규모 미만사업 타재 면제

- **(현황)** 500억원 미만 건축·R&D사업은 예타대상에 未해당되나 총사업비 20% 이상 증가시 타재 실시
- **(개선방안)** 요구 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재 시행을 제외

[5] 타재면제 요건 합리화

- **현황**
 - ① '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'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활용 가능성 낮음 → 구체화 필요
 - ② 공사비가 경제적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
- **개선방안**
 - 공사비가 표준공사비보다 낮고, 현저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익을 감안하여,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[6] 타재·사재시 설계적정성 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등 제외

□ 현황

- ① (전체사업) 수요예측재조사 결과, 수요가 30% 이상 감소하는 경우, 타재·사재 시행
 - ② (건축사업) 기본·중간·실시설계 종료시 조달청 '설계적정성 검토'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변경 요구
- 타재·사재 시행시 설계 적정성 및 수요에 대해 검토하므로, 유사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

- (개선방안)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재·타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사전협의를 통해 조달청 '설계 적정성 검토' 및 수요예측재조사를 제외

[7] 수요예측재조사 요건 합리화

- (현황) 이전단계 추진 후 5년 경과시 수요예측재조사를 당연 시행
 - *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몰비용 발생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면제 제도 운영 중
 - '재해예방·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'에 대해서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할 필요성
 - 상당한 매몰비용 발생시 사업규모·내용변경이 곤란하므로 수요예측재조사의 실익도 낮음
- (개선방안) 타재 면제요건 중 일부를 수요예측재조사에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
 - ①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
 - ② 긴급한 경제·사회 상황에 대응
 - ③ 재해예방·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 필요

3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

(1) 단계적 설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화 적기 반영

- (현황) 단계적 설계 사업은 착공시 후속 시설 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시에도 매몰비용으로 인해 타재시행 곤란
- (개선방안)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, 단계별 설계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판단시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총사업비 산정

※ (예시: 현행) 철도 노반 실시설계시 후속분야는 기본계획만 수립
→ (개선) 타당성재조사 대상 총사업비 = 해당사업 선추진분야 실시설계 사업비 + 유사사업 후속분야 실시설계 평균 사업비

(2) 정보화 사업 관리범위 명확화

- (현황) 정보화사업 총사업비에 구축완료 이후 5년간 유지·보수 및 추가 구축비를 포함
 - 시스템 내 기능 추가로 당초 사업 지연 발생 우려
- (개선방안) 총사업비 관리목적 및 유사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, 구축완료 이후 단계 추가 소요는 신규사업으로 추진

(3) 일괄입찰사업 및 기술제안 사업 관련 절차 명확화

- (현황)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에 대해 제8절에서 별도 규정
- ① (일괄입찰사업 협의) 총사업비 협의 일반원칙(지침 제19조)에 더해 기본계획 완료 후 최종낙찰자 선정 전 협의 의무도 별도 규정
 - 수의계약 턴키 등 설계 단계 상당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시에도 사전 협의 의무 유무 명확화할 필요
- ② (기술제안입찰) 일괄입찰사업과 진행방식이 유사하여 실무에서 제8절을 준용하여 운영중이나, 현장에 혼선

□ 개선방안

- ① **(일괄입찰사업 협의)** 수의계약 턴키 등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도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*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명문화

*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가능

- ② **(기술제안입찰)** 일괄입찰사업과 진행방식이 유사한 점 및 실제 제도 운영현황을 감안하여, 제8절에 준용규정 마련

4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

(1) 낙찰차액 조정 절차 개선

- **(현황)**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조정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
 - 설계, 공사, 감리 별도발주 증으로 계약 후 낙찰차액 조정 사유 다수 발생, 행정력 과다 소모 및 제재 사례 지속 발생
- **(개선방안)**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분기 익월 말일까지 낙찰차액 자율조정 → 3개월치 낙찰차액 일괄 조정 가능
 - 다만 차년도 완공사업의 경우 현행과 같이 5월 31일까지 낙찰차액 자율조정 및 실적통보

계약일	낙찰차액 감액(자율조정)
1, 2, 3월	4월 30일까지
4, 5, 6월	7월 31일까지
7, 8, 9월	10월 31일까지
10, 11, 12월	1월 31일까지

[2] 지침 위반사항 자진 협의 시 감경 규정 도입

- **(현황)** 지침 위반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 및 <별표 10>에 따라 불이익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하여 기본경비 제재 중
 - 국비 증액 등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, 과거 지침 위반사항을 적기 관리하는데 애로
- **(개선방안)** 자진 신고 시 불이익금액 감경 논의가 가능하도록 <별표10> 제재 기준에 근거규정 마련
 - 다만 자진 협의로 인한 감경 시에도 해당 규정 악용 방지를 위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적 제재는 병과

[3]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등 자율조정 허용

- **(현황)** 법률·안전상 필수사항이면서 비용이 표준화·단일화된 경우,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실익이 낮음
 - 특히, 관급자재 비중 확대에 따라 조달청에 지급하는 관급자재 구매계약 조달 수수료 협의 조정 횟수 증가
 - 설계기준 및 안전상 상부 작업시 시스템 동바리 적용이 필수적
- **(개선방안)**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및 상부작업 시스템 동바리 설치 등에 대해 한도내 자율조정 허용

[4] 공공기관 보상업무 대가의 간접 보상비 포함

- **(현황)**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관련 비용이 총사업비 중 보상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명확
 - 토지보상 업무를 타기관에 위탁시 위탁수수료를 간접보상비에 포함·지급 → 대가 미지급시 동일대가 원칙에 불일치

- (개선방안) 사업수행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해서도 간접보상비에 포함하되, 위탁수수료를 상한으로 설정
 - 사업 수행기관 등의 보상업무 대가 = Min [실제 투입 인건비·경비, 토지보상법상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탁수수료]

Ⅲ. 향후계획

- 「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」 마련 및 관련 절차 이행
- 개정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 시행('25.11월)